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. 9. 10 선고 2014가합908 판결 [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2015. 8. 13.

판결 선고2015. 9. 10.

주 문

1. 피고 B, D, E,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. 1. 9.부터, 피고 D은 2015. 2. 7.부터, 피고 E, F는 각 2015. 1. 10.부터 각 2015. 9. 10.까지는 연 5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피고 C은 피고 B, D, E,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금원 중 1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. 9.부터 2015. 9. 10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3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, D, E,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/5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.

5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 B, D, E,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- 1) 피고 B, D, E, F는 안동시 G에 있는 구 H웨딩홀(이하 '이 사건 웨딩홀'이라 한다)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.
- 2) 원고는 결혼사진 촬영업을 하기 위하여 2006. 10. 1. 피고 B, D, E, F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차보증금 2억 5,000만 원, 임대기간 2006. 10. 1.부터 2008. 10. 1.까지, 1년에 300쌍의 결혼식 사진 촬영 보장을 조건으로 하여 임차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임대차계약'이라 한다).
- 3) 원고는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6. 10. 9. 1억 원, 2006. 10. 31. 1억 5,000만 원 합계 2억 5,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다.
- 4) 원고는 이 사건 웨딩홀에서 사진촬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웨딩홀이 경매되는 바람에, 2007. 12.경 이 사건 웨딩홀에서 퇴거하였다.
- 5) 따라서 피고 B, D, E,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15. 1. 9.부터, 피고 D은 2015. 2. 7.부터, 피고 E, F는 각 2015. 1. 10.부터(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이다)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5. 9. 10.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근거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기초사실

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8,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- 1) 피고 C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 B이 구속되자 2012. 4. 9. 원고에게 '이 사건 웨딩홀 사진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출소할 때까지 매월 10일(2012. 5. 10.부터)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'는 내용의 사실확인서(이하 '이 사건 사실확인서'라 한다)를 작성해 주었다.
- 2)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합계 1,400만 원(=2012. 5. 10. 200만 원+2012. 6. 11. 200만 원+2012. 10. 19. 200만 원+2012. 11. 21. 200만 원+2012. 12. 21. 200만 원+2013. 4. 1. 200만 원+2013. 5. 2. 200만 원)을 지급하였다.
- 3) 한편, 피고 B은 2014. 3. 26. 형기종료로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.

나. 원고의 주장

피고 C은 피고 B, D, E,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5,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, 피고 B이 출소할 때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되 피고 B이 출소한 이후에는 피고 B과 협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정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. 따라서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, D, E,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판단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(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'이 사건 웨딩홀 사진대금'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) 중 일부 금액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취지로 2015. 5. 10.부터 피고 B이 출소할 때까지 매월 10일에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,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위 약정을 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 C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, D, E,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5,000만 원 중 3,200만 원[=4,600만 원{=200만 원×23회(2012. 5. 10.부터 피고 B이 출소한 2014. 3. 26.까지 매월 10일이 도래하는 횟수)}-피고 C이 기지급한 1,400만 원]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. 1. 9.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. 9. 10.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B, D, E, 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 C에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남균

판사김수정

판사이인경